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1명	채용일 ~ 2년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

※ 일반임기제 :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관리 ○ 평화통일 정책·교육 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 기타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관련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75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25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6490호)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22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7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2026.10.22. 개정 시행일 기준)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0.29.) 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급	자격 요건
일반임기제 7급	① 3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②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경력①/경력②/경력③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10.2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실무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직무내용 관련 분야’는 통일(북향민 대상 포함) 또는 청소년 관련 ① 체험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② 체험연수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관리 ③통일 정책·교육 관련 사업 및 행사 추진 등의 업무를 말함
- ‘직무내용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주당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함)이 아닌 통일·청소년 분야의 연구 실적(참여) 등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하며 합산 불가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10.19.) 기준]

우대요건	● 자격 요건을 충족 후 초과하는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 ● 통일(북한) 또는 청소년 관련 학과 석·박사 학위 보유 ※ 북한학(정치행정학부 북한학 전공·통일외교 전공 포함)·청소년학·청소년교육학·청소년지도학·청소년상담학·청소년복지학 등 ● '직무내용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정교사(1·2급), 준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직무 수행에 관련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분야 실무경력,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등)
- ※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 산정 제외(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초과하는 직무내용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일시	장소
공고	'26.10.7.(수)~10.19.(월)	·인사혁신처(나라일터)·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6.10.15.(목)~10.19.(월)	·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장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팀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마감일 후 3일 내에 응시원서 접수 완료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한 응시자는 유선 연락(031-839-7950)바라며, 연락 유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유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최종시험(면접) 당일 배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10.26.(월)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26.10.29.(목)	·통일부(정부서울청사)
최종합격자 발표	'26.11.12.(목)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결격사유 조회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19.(월)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04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팀(인사담당) / 문의전화 : 031-839-7950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통일부 일반임기제 7급(통일미래체험연수 개발·운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방문제출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만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8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1. 12. ~ 12. 22.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1월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	68,922	33,075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역량평가 관련 사항은 과장급 직위 채용 시에만 해당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
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1.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0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신청 후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 증명
· 폐업사실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환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채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증명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경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월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바로가기

자주찾는 메뉴

세금증명 서비스

My 홈택스

홈택스안내

접기 >

- 기타 문의사항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팀(031-839-7950)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7급)	1명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팀(연천군)

주요 업무	○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관리 ○ 평화통일 정책·교육 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 기타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관련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연수생에 대한 관심·애정), 조직 내 팀워크 ○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조정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상황인식 및 판단력 등
-------	---

필요 지식	○ 평화통일미래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지식 ○ 연수생 지원·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지식 ○ 통일·북한 관련 체험교육연수 관련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경 력	○ 3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내용 관련 분야: 통일(북향민 대상 포함) 또는 청소년 관련 ① 체험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② 체험연수 관련 협력체계 구축·관리 등의 업무 ③ 통일 정책·교육 사업 및 행사 관련 업무
우대요건		○ 자격 요건을 충족 후 초과하는 '직무내용 관련 분야' 실무경력 ○ 통일(북한) 또는 청소년 관련 학과 석·박사 학위 * 북한학(정치행정학부 북한학 전공·통일외교 전공 포함)·청소년학·청소년 교육학·청소년지도학·청소년상담학·청소년복지학 등 ○ '직무내용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정교사(1·2급), 준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활용, 차등 배점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7급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 (총 4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 분	내 용
9.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필요시 안내)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시 별지서식 제9호 활용)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2.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응시직급(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응시자 미기재	일반임기제 6급 또는 7급	홍길동	1990. 1. 1.	010-1234-5678
응시자격요건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해당요건 반드시 1가지만 체크(V)			

목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정부수입인지 포함)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7. 주민등록초본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 제출 ☐ 미제출
8.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제출 ☐ 미제출
9.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1.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2. 학위논문 요약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 원서 (원본)

○○○부장관 귀하

본인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 6호 경력경쟁 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 기재
(예)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공공A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일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일부장관 귀하

학위논문 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담당업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 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 사항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년월일~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				주00시간										
		~														
		~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tr><td colspan="2">발급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